

보도자료

2010년 4월 29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이재범 과장(☎750-2670)

이용자보호과 이승진 사무관(☎750-2671) lsung@kcc.go.kr

□ KT 정액요금제 상품 개요

- (맞춤형 정액제)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·외 통화료에 1천~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·외 무제한 통화상품
- (LM더블프리) 최근 6개월 월평균 LM(집전화→이동전화)통화료에 30%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

〈정액요금제 가입자 현황〉

구분	'10.3월 현재	상품가입 기간
맞춤형정액제	4백88만1천명	'02.9.10-12.9(3개월)
LM더블프리	1백41만3천명	'04.9-'09.12월

□ 문제점

- KT는 본인의 가입의사(전화 녹취록 등)를 확인할 수 없는 '맞춤형 정액제,' 'LM더블프리' 가입자에 대해 그 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

- 하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

※ 방통위는 KT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(4.3억) 부과('08.12월)

□ 향후 조치계획

-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(전화녹취, 서면동의)를 받도록 하고(~10월)
-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,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
-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(요금청구서 등)를 제출할 경우,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